

대구지방법원 2021. 7. 16 선고 2020가합20647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
담당변호사 임윤성

피 고 1. 주식회사 B
2. C 주식회사
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명호
변 론 종 결 2021. 5. 28.
판 결 선 고 2021. 7. 16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 주식회사 B(이하 ‘피고 B’라 한다)와 피고 C 주식회사(이하 ‘피고 C’라 한다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0. 2. 5.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0. 2. 5. 접수 제59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09. 12. 23. D, E, F 등(이하 위 3명을 'D 등'이라 한다)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5408호로 계약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0. 9. 16.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. 이에 대해 D 등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 위 승소판결의 내용은 'D은 원고에게 1,144,970,416원, E, F은 각 88,757,396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0. 1. 1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라는 내용이다¹⁾ (이하 원고의 D 등에 대한 위 채권을 '이 사건 판결금채권'이라 한다).

나. D 등은 피고 B의 주주들이다. 원고는 2019. 9. 27.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391,310,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의 피고 B에 대한 주식 27,500주(275,000,000원), E의 같은 주식 8,881주(88,810,000원), F의 같은 주식 2,750주(27,500,000원)에 관한 기존의 가압류(대구지방법원 2010카합2) 중 391,310,00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(대구지방법원 2019타채9058)을 받았고, 그 결정은 2019. 10. 1.경 피고 B에 송달되었다.

다. 피고 B는 2020. 2. 5.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 매도하고(이하 위 매매를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,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0. 2. 5. 접수 제5960호로 피고 C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다음과 같은 4가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, 피고 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처분하여 무자력이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, 청구취지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.

가. D 등의 주식에 관한 추심권한

원고는 D 등의 피고 B에 대한 주식에 관하여 기초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압류 및 추심명령(대구지방법원 2019타채9058)을 받았다. 따라서 원고는 D 등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 B에 대한 추심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바,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채권

피고 B의 대표이사 G는 원고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은 H회사의 I 팀장에게 추심금 391,310,000원의 변제를 약속하였다.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해 위 금액 상당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,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다. D 등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채권자대위권

원고는 D 등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자이다. 그런데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D 등 주주가 피고 B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사실상 0원이 되었다. 따라서 피고 B에 대해, D은 275,000,000원(27,500주), E은 88,810,000원(8,881주), F은 27,500,000원(2,750주)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. 그런데 D 등은 무자력이므로, 원고는 D 등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자로서 무자력인 D 등을 대위하여 피고 B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행사한다.

라.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

피고 B는 D 등 주주와 공모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 매도하고, D 등의 주식가치를 0원으로 만들었다. 이는 D 등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. 따라서 원고는 직접 피고 B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, 이는 원고 주장의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.

3. 판단

살피건대,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 중 ① D 등의 주식에 관한 원고 주장의 추심권한은 해당 주식을

책임재산으로 하여 집행할 권한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피고 B에 대한 채권으로 보기 어렵고, ②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채권, ③ D 등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, ④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 주장의 채무자인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피보전채권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, 그 존재를 전제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,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인섭, 판사 나혜선, 판사 김준철

별지목록

1.

[토지] 경상북도 경산시

지목 공장용지

면적 3481㎡

2.

[건물] 경상북도 경산시

건물내역

☐ 동

철골조 패널지붕 2층 공장

1층 921.90㎡ 2층 922.52㎡

☐ 동

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창고 및 사무실

지층 창고 100.98㎡

1층 창고 191.52㎡

2층 사무실 191.52㎡

☐ 동

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파이프조 패널 및 스라브지붕 단층 창고 및 공장

583.54㎡

☐ 동

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창고

1층 216㎡ 2층 216㎡

☐ 동

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경비실 및 창고 48.6㎡

끝.

1) 다른 피고들도 있었으나, 이 사건과 관련된 D 등에 관한 부분만 기재하였다.